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삼척시, 화천군, 인제군, 양양군, 양구군

내 용

강원도 삼척시, 화천군, 인제군, 양양군에서는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근거로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 예비군 육성·지원 시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구군에서는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통학생 택시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동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 단위로 지역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향토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향토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발전 방향·시책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학교 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한 사항,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에 관한 사항, 우수 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 환경개선 및 지원 등의 사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표 1], [표 2]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는 시장·군수 소속의 자체 심의기구인 통합방위협의회, 교육발전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 후 그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군부대 위문금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 등을 직접 집행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표 1]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협의회에 교부·집행한 지방보조금 명세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예산과목	보조금 실제 집행부서
	교부	집행	교부	집행	교부	집행	교부	집행	교부	집행		
총계	1,881	1,484	409	400	441	417	539	520	491	147		
○○시	138	137	50	52	40	40	30	30	16	15	민간경상사업보조	○○과
○○군	969	717	187	176	229	205	299	280	255	56	예비군육성지원경상 보조	○○○○○○과
○○군	660	519	150	150	150	150	180	180	180	39	예비군육성지원경상 보조	○○○○과
○○군	114	111	22	22	22	22	30	30	40	37	예비군육성지원경상 보조	○○○○과

※ 2016. 8. 31. 기준

[표 2] 양구군 교육발전위원회 보조금 집행 명세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	지원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부서
총 계		98	69	
2013년	대중교통 취학지역 통학생 택시운행 지원 등	26	25	○○○○지원실
2014년	농촌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통학버스 지원 등	21	21	○○○○지원실
2015년	저소득층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등	23	23	○○○○지원실
2016년	전통예절학교 운영지원 등	28	-	○○○○지원실

조치할 사항 삼척시장, 화천군수, 인제군수, 양양군수, 양구군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관련 조례를 근거로한 대중교통 취학지역 통학생 택시운행 지원 등의 사무와 관련된 경비를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